

서울특별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007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4년 9월 5일

제안자 : 행정자치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, 용어의 정확한 사용과 통일,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“주취자” 정의에서 소란행위를 일으키는 주취소란자는 제외하여 정의함(안 제2조제1호).
- 주취자 보호시설에서 보호하는 시간을 명확하게 규정함(안 제2조제2호).
- 시행계획 수립·시행 주기를 “필요시”가 아닌 “2년”으로 명확하게 규정함(안 제4조).
- 용어의 통일적인 사용을 위하여 “구호”를 “보호”로 함(안 제5조제1항, 제7조).

서울특별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주취자”란 음주로 인하여 판단력 및 신체기능이 저하되어,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.

안 제2조제2호 중 “일시적으로”를 “24시간 이내로” 한다.

안 제4조 본문 중 “필요 시”를 “2년마다”로 한다.

안 제5조제1항 중 “구호를” “보호를”로 한다.

안 제7조 중 “구호와”를 “보호와”로 한다.

서울특별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

〈 수정안 조문대비표 〉

제 정 안	수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“주취자”란 음주로 인하여 판단력 및 신체기능이 저하되어,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<u>상태에 있거나 소란행위 등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·재산 그 밖의 사회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</u>을 말한다. 2. “주취자 보호시설”이란 제1호의 주취자 중 의식이 없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보호자 인계가 곤란한 주취자에게 신체적·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<u>일시적으로</u>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. 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) 시장은 <u>필요 시</u>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취자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1. 주취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. 주취자 보호를 위한 신고체계 구축 3. 주취자 보호를 위한 관련 행정기관 및 법인·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·운영 4. 그 밖에 시장이 주취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제2조(정의) (제정안과 같음) 1. ----- ----- ----- <u>상태에 있는 사람</u>을 말한다. 2. ----- ----- ----- ----- <u>24시간 이내로</u> ----- -----. 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) --- - <u>2년마다</u> ----- ----- -----. 1. ~ 4. (제정안과 같음)

제 정 안	수 정 안
제5조(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 등) ① 시장은 주취자 <u>구호</u>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(이하 “서울경찰청”) 및 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1. 주취자 보호 대상 여부 평가 2. 주취자 인수 및 보호·관리 3.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 기관에 인계 및 조치 요청 4. 그 밖에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취자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·운영의 일부를 관련 기관,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 제7조(비밀 준수) 이 조례에 따라 주취자 <u>구호</u>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을 준수하여야 한다.	제5조(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 등) ① ----- <u>보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4. (제정안과 같음) (제정안과 같음) (제정안과 같음) 제7조(비밀 준수) ----- <u>보호</u>와 ----- ----- ----- -----.

서울특별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주취자의 보호 및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취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 공공의 안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주취자”란 음주로 인하여 판단력 및 신체기능이 저하되어,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주취자 보호시설”이란 제1호의 주취자 중 의식이 없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보호자 인계가 곤란한 주취자에게 신체적·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24시간 이내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주취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) 시장은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취자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주취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
2. 주취자 보호를 위한 신고체계 구축
3. 주취자 보호를 위한 관련 행정기관 및 법인·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·운영
4. 그 밖에 시장이 주취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 등) ① 시장은 주취자 보호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경찰청(이하 “서울경찰청”) 및 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주취자 보호 대상 여부 평가
2. 주취자 인수 및 보호·관리
3.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에 인계 및 조치 요청
4. 그 밖에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취자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·운영의 일부를 관련 기관,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6조(협력체계 구축) ① 시장은 효율적인 주취자 보호를 위하여 경찰, 소방,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 연계·협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계·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7조(비밀 준수) 이 조례에 따라 주취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, 「개인 정보 보호법」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